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47
----------	------

2024년 12월 19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0. 14. 이소라 의원(18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24. 10. 18.

다.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24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
-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직장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 본인의 휴가만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예비 부모로서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해 제약이 따름.

- 이에 임신·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게도 검진 및 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남성 공무원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 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 제5항의 신설)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 기 타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10. 23. ~ 2024. 10. 27. (5일간)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안 제29조 제5항 신설)

-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소속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10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조례안 제29조 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특별휴가) ① ~ ④ (생략) <신설>	제29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⑰ (생략)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 ⑱ (현행 제5항부터 제17항까지와 같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지난 2019년부터 여성공무원에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검진휴가를 비롯한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¹⁾

-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임신검진휴가와 같은 출산·육아 관련 휴가제도 확대로 공직사회에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에도,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가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이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소속 남성 공무원에게 10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부여해 예비 부모인 남성 공무원을 배려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에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서울특별시 공무원 대상 임신검진동행휴가 선제적 도입

- 한편, 지난 2024년 8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대상 ‘임신검진동행휴가’가 도입되었음.
- 다만, 지난 제326회 임시회(2024. 9. 4.)에 이루어진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 중 ‘상위 법령의 규정 외 특별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휴가 신설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²⁾

1)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맞춤형 지원 제도 중 복무 관련 사항(인사혁신처).

단계	종류	주요 내용	
복 무	임신	난임치료시술휴가	시술(인공수정 등)별 2~4일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까지
		임신검진휴가	10일 이내
		유산휴가	임신 기간별 10~90일 *남성공무원의 경우 기간별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출산	출산휴가	90일(다태아는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다태아는 15일)
	육아	육아시간	8세 또는 초2 이하, 1일 2시간까지 36개월간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이내(자녀 돌봄 시 자녀 수에 따라 유급 인정)

2) 광역시·도 중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동 휴가(10일)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고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

- 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국에서는 저출생 위기 극복 등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를 밝혔음.
- 서울시는 임신검진동행휴가 도입 후 실제 사용 시에는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신기간 중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최초 사용 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증빙하고 2회차 사용부터는 배우자의 검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음.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1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과 달리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남성공무원을 배려하면서도 조직 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4 종합검토

- 시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도입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함께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제도 확대 분위기를 이어가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음.
- 또한, 이미 서울시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회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다만, 저출생 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과는 별개로, 현재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대상 다양한 특별휴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임신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에게까지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복무규정 및 서울시의회 조례상 특별휴가(제29조).

- 제도가 도입된다면 특별휴가 도입 취지에 맞게 시행 과정 중, 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가 배우자의 임신 검진 관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0명, 찬성 10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소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4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4일
발 의 자: 이소라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철,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남궁역,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서준오,
유정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한 신, 황철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
-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 본인의 휴가만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예비 부모로서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해 제약이 따름
- 이에 임신 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게도 검진 및 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성 공무원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 제
5항의 신설)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특별휴가)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⑤ ~ ⑰ (생략)</p>	<p>제29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u></p> <p>⑥ ~ ⑱ (현행 제5항부터 제17항까지와 같음)</p>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남성공무원이 검진에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동 개정안 제29조(특별휴가)제5항에 따른 임신검진동행 특별휴가는 제4항의 여성공무원 임신검진휴가와 동일하게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